

「2024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성공모델 후보군 모집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임팩트 창출하는 조직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성공모델 후보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경 기 도 사 회 적 경 제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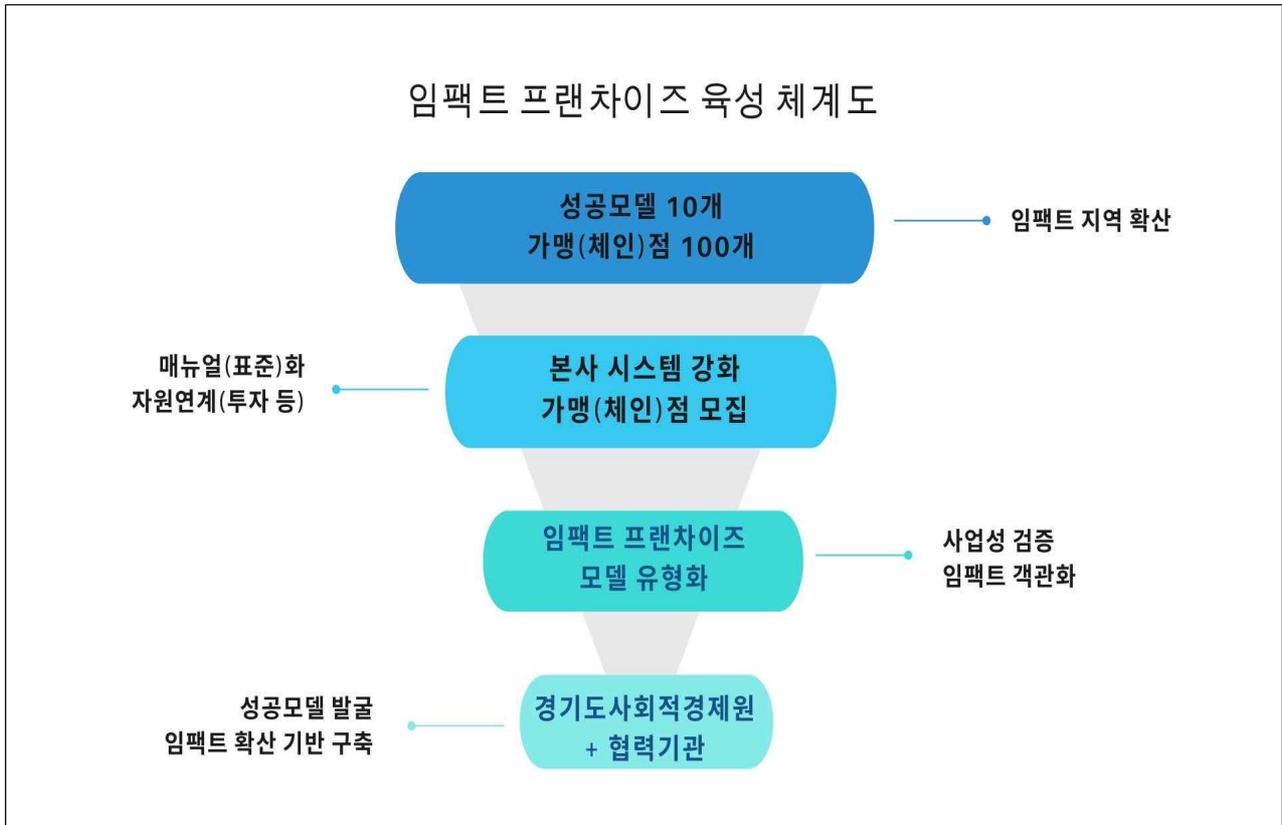
1

사업개요

- 목 적 :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임팩트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규모화하고 추가적인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산을 통한 도민 체감 제고
- 기 간 : 2024년 1월~11월
- 대 상 : 사업성과를 통해 임팩트를 창출하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
- 방 식 : 직접사업
- 총예산 : 320백만원(금삼억이천만원) ※ 성공모델 6개소 선정 후 차등 지급예정
- 주요 내용 :
 - 성공모델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용 가능한 후보군 발굴
 - 사업성 검증을 통해 임팩트 프랜차이즈 성장을 위한 단계별 솔루션 지원

- 후보군 선발(12개소), 1차 멘토링 후 최종 모델 선정, 2차 멘토링으로 사업화(6개), 가맹점 10개소 이상 개설 지원
- 모델 유형별 사업성 분석을 통한 확산성 제고

○ 추진체계



2

신청 요건 및 지원내용

○ (모집대상) 임팩트 프랜차이즈 성공모델 후보군 12개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 중 지점을 통해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 임팩트 창출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 지원기간 내 경기도로 본사 또는 지점 이전을 계획하는 사업자
- 경기도내 가맹점 또는 체인점 운영하며 사업 지원기간 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계획한 사업자

○ (모집분야)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 분	내 용
A유형	- 사회적경제 조직의 프랜차이즈화
B유형	- 직영, 가맹, 대리, 공동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기업 중 임팩트 창출이 가능한 사업자 ※ 가맹법을 따르지는 않으나 기술, 콘텐츠, 서비스 제공 형태가 가맹과 유사한 경우도 포함.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내 용
공통	- (소재지) 주사무소(본사) 소재지가 경기도내 ※ 주사무소(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외 지역일 경우 성공모델 선정이후 협약일 전까지 소재지를 변경해야 함. (최소 3년간 유지 필수)
A유형	<p>● 사회적경제 조직의 프랜차이즈화</p> <p>- (필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증빙 가능한 법인, 소셜 벤처기업</p> <p>- (선택)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가능성과 자립 환경</p> <p>① 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상 거래 내역 보유</p> <p>② 투자연계 및 유치 업력 보유</p> <p>③ 서비스 검증과 운영 가능한 독립된 오프라인 공간(매장/공장) 보유</p> <p>※ 가. 필수 조건이 충족되고 선택 조건 2개 이상 충족해야 함. 나. 상기 ‘가’항이 충족되는 2개 이상의 법인 협업으로 지원 가능함.</p>
B유형	<p>● 프랜차이즈 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자의 임팩트 창출</p> <p>- (필수) 프랜차이즈 업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업종을 보유한 사업자</p> <p>- (선택) 비즈니스 모델의 지역사회 연계성과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p> <p>① 경기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 수행 이력 보유</p> <p>② 자사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활용한 ESG, CSR 사업 수행 이력 보유</p> <p>③ 정보공개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기술독점권, 독점판매권, 권한위임장(LOA) 중 보유</p> <p>④ 해외 지점 보유 및 개설 지원 업력 보유</p> <p>⑤ 대표자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과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활동</p> <p>※ 가. 필수 조건이 충족되고 선택 조건 3개 이상 충족해야 함. 나. 상기 ‘가’항이 충족되는 2개 이상의 사업자 협업으로 지원 가능함.</p>

구 분	내 용
추가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 프랜차이즈 기반 구축·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또는 협력하는 사업자 - 12개 분야에 대한 기술 기업으로 증빙 가능한 사업자 - ① 인공지능(AI), ② 사물인터넷(IoT), ③ 가상현실, ④ 자율주행, ⑤ 로봇, ⑥ 빅데이터, ⑦ 헬스케어, ⑧ 스마트팩토리, ⑨ 스마트팜, ⑩ 디지털전환(DX), ⑪ 3D프린팅, ⑫ 녹색기술(기술/소재/제품)

※ 상기 분야 중 해당 내용 선택하여 지원

○ 지원 내용

구 분	멘 토 링		사 업 화
	1차	2차	
기 간	2024년 4월	2024년 5월~11월	2024년 6월~11월
방 식	후보군 선발 평가 (평가기준 60점이상 고득점 순)	1차 멘토링 후 평가 (평가기준 60점이상 고득점 순)	2차 멘토링 중 평가 (평가기준 60점이상 고득점 순)
개 소	12개소	6개소	6개소
예 산	-	-	320백만원 (삼억이천만원) ※ VAT 미포함 (업체에 따라 차등 지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팩트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 ·ESG기반 사업전략 코칭 ·사업성 및 임팩트 검증 ·‘사회성과관리’교육(원내 사업 연계) ·사업수행 능력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 모델 유형별 특성 맞춤형 지원 ·표준화, 매뉴얼 제작 ·본사시스템 구축 ·가맹(체인)점 개설 자원 연계 ·해외지점 및 가맹점 개설 ·투자설명회 참가 기회 제공 ·‘사회성과관리’ 및 코칭(원내 사업연계) ·사업성분석 보고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시스템 구축 ·가맹(체인)사업 전문인력 지원 ·2차 멘토링 내용 실행에 필요한 비용 ·국내·외 가맹(체인)점 1개 이상 개설 비용 ·사회성과 측정을 통한 임팩트 창출 가시화

○ 추진 과정



3

선발 개요

○ (심사 기준)

심사 요소	세부 내용
미션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 비즈니스 실행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비즈니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의 핵심 솔루션과 고개 가치 • 지역(경기도)내 비즈니스 실행 및 정착을 위한 전략(가맹점 개설 등)
창업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팀구성원 및 역할. 각 팀원들의 역량/강점 • 경력, 전문성, 비즈니스 관련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이력

○ (선정 기준)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정심사위원 평점 60점이상 (고득점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100)
사회적 가치창출 (40)	• 사회적 미션의 명확성(창업가의 소셜벤처로서의 성장 의지 등)	15
	• 중요성과 범위(중요성과 시급성, 가치 창출의 범위 등)	10
	• 가능성(해결 방법 구현 가능성, 협업 및 협력 체계 등)	15
경제적 가치 창출 (40)	• 사업 혁신성(기승 사업 모델 등)	15
	• 사업화 수익성(수익 창출 계획, 달성 가능성, 매출 수익 등)	15
	• 성장 가능성(시장 잠재력,사업 영역 확장 등)	10
팀역량 (20)	• 전문성(팀역량, 지식/경험/노하우. 리더 역할 경험 등)	20

※ 1차 멘토링 진행 후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기간) 협약일 ~ 2024.11.30.

※ 선정업체별 지원기간은 규모, 기업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선정 절차)

절차 및 일정	세 부 내 용
모집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시행 - 경기도 누리집, 사경원누리집 및 SNS 활용
접 수	○ 참여 신청기업 서류 제출 및 접수 진행
서류 검토	○ 협력기관과 검토를 통한 참가 적격 여부 판단
대 면 심 사	○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 진행
선발 및 협약	○ 후보군 12개 업체 선발 및 협약
1차 멘토링 (집체교육)	○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사업성 및 임팩트 검증
현장실사	○ 참여 신청기업 대상 현장실사 실시(실사팀 구성)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실사, 멘토링 시행한 내용 바탕으로 검토의견서 작성
최종 심사	○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 진행
선정 및 협약	○ 성공 모델 6개 선정 및 협약

○ (추진 일정)

내용	구 분		선정								
			2분기			3분기			4분기		
	수	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정	참여업체	선발									
		협약 체결									
프로그램 진행	1차 멘토링	집체 교육									
		사업 검증									
	모델 선정/협약										
	2차 멘토링	사업전략									
사업화											
가맹개시											
결과보고	평가										
	정산 및 결과 보고										
	사업성 분석										

*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월) ~ 4월10일(수) 16:00
- (신청 방법) 사경원 누리집 사업/교육 신청 (<https://gsic.or.kr>)
- (결과 발표) 2024년 4월 중(개별통지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게시)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결과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확인 증빙자료가 필요할 시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다. 향후 선발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라. 공고내용 숙지 및 제외대상 확인하여 신청 요망
 - 마. 임팩트 프랜차이즈 성공모델(후보군)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됨
 - 바. 사업 내용의 특성 상 필요한 인건비의 경우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 사.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 하고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24년11월30일까지 종료 되어야함
 - 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1) 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사업, 중앙정부·타 지자체·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곳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곳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곳
 - (4)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협동조합이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
 -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사업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
 - (6)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

- 종에 해당하는 업체
- (7) 휴·폐업중인 업체
- (8)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구매협동조합의 경우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중 예외 사항]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 참여제한 제외
 -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 참여제한 제외
 -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가맹본부
 -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

- 차.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카.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환수조치**
- 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과 최종결과보고(보조금 정산포함)**를 실시함. 단,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 파. 동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4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관리」에 따름
 하. 이외 사업 관련 질의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031-258-3262)으로 문의

6	제출 서류
----------	--------------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참여 사업자	1. 신청서 1부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신청자(대표) 제출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4. 모든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정보공개서 1부	해당업체만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매출 증빙자료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사본
	9. 정관 1부	해당업체만 제출
	10. 서약서 1부 [별지 제1호]	
	11. 선정참가유의서 [별지 제2호]	
	12.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별지 제4호]	

[참고1] 사회적경제조직 인정 기준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 2)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이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전문개정 2019.3.13.]
 - 라.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마을기업”이라 한다) [신설 2019.3.13.]
 -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제외한다.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 차. 「산림조합법」제2조각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 카.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타.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파.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3.13.]

너.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6조의8에서 이동 <2023. 1. 3.>]